

**투자위험등급 :**  
3 등급  
[중간 위험]

제이피모간자산운용코리아(주)는 투자대상 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1 등급(매우 높은 위험)에서 5 등급(매우 낮은 위험)까지 투자위험등급을 5 단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분류기준에 따른 투자신탁의 위험등급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신 후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 간이투자설명서

이 투자설명서는 JP 모간 이머징 마켓 증권투자신탁(채권-재간접형)에 대한 투자설명서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발췌한 요약 정보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JP 모간 이머징 마켓 증권투자신탁(채권-재간접형) 수익증권을 매입하기 전에 반드시 증권신고서 또는 정식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 집합투자기구 명칭	JP 모간 이머징 마켓 증권투자신탁(채권-재간접형)
2. 집합투자업자 명칭	제이피모간자산운용코리아(주) 홈페이지 : <a href="http://www.jpmorganam.co.kr">www.jpmorganam.co.kr</a> ☎ 758-5200
3. 판매회사	각 판매회사 본 · 지점 (판매회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금융투자협회( <a href="http://www.kofia.or.kr">www.kofia.or.kr</a> ) 및 집합투자업자( <a href="http://www.jpmorganam.co.kr">www.jpmorganam.co.kr</a> )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작성기준일	2010년 10월 8일
5.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	2010년 10월 18일
6. 모집 또는 매출 증권의 종류 및 수 (모집 또는 매출 총액)	증권의 종류: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증권의 수: 이 투자신탁은 모집(매출)총액에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7. 모집 또는 매출 기간(판매기간)	이 집합투자기구는 개방형 집합투자기구로 판매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계속 판매할 수 있습니다.
8. 집합투자증권 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의 공시장소	가. 집합투자증권신고서 전자문서: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홈페이지 <a href="http://dart.fss.or.kr">dart.fss.or.kr</a> 나. 투자설명서 전자문서: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홈페이지 <a href="http://dart.fss.or.kr">dart.fss.or.kr</a> 서면문서: 집합투자업자, 각 판매회사

\* 이 투자신탁은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으로서 간이투자설명서의 내용은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 이후(청약일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않는 실적배당 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1. 투자판단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등급 및 적합한 투자자유형에 대한 기재사항을 참고하시고, 귀하의 투자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3.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는 반드시 실현 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4. 과거의 투자실적이 미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5. 이 집합투자기구 또는 하위 집합투자기구는 파생상품에 투자될 수 있으며 파생상품의 가치를 결정하는 기초변수 등이 집합투자업자의 예상과 다른 부정적인 변화를 보일 때에는 당초 예상과 달리 투자자는 큰 손실을 입거나 원금전체의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6. 이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하위 집합투자기구의 대부분이 외국통화로 표시된 외화자산에 투자되기 때문에 환율변동에 따른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7. 판매회사는 투자실적과 무관하며, 특히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의 판매회사는 단순히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업무(판매 등 판매행위와 관련된 부가적인 업무포함)만 수행할 뿐 판매회사가 동 집합투자증권의 가치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8. 집합투자증권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며,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9. 투자자가 부담하는 선취수수료 등을 감안하면 투자자의 입금금액 중 실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금액은 작아질 수 있습니다.

## I . 집합투자기구의 개요

### 1. 명칭

명칭	JP모간 이머징 마켓 증권투자신탁(채권-재간접형)							
투자신탁의 종류 (클래스)	A	C	C-F	C-W	C-E	C-S	UA	UC-E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29905	29906	29907	29908	29911	29912	29913	29914

### 2. 모집예정기간

이 투자신탁은 개방형 집합투자기구로 모집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계속 모집할 수 있습니다.

### 3. 모집예정금액: 이 투자신탁은 모집(매출)총액에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 4.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이 투자신탁의 계약기간은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로부터 신탁계약의 해지일까지입니다. 다만, 법령 또는 이 투자신탁의 신탁계약상 일정한 경우에는 강제로 해산(해지)되거나, 사전에 정한 절차에 따라 임의로 해산(해지)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5. 분류

- 가. 형태별 종류: 이 집합투자기구는 **투자신탁**으로 분류됩니다.
- 나. 운용자산별 종류: 이 집합투자기구는 **증권집합투자기구(채권- 재간접형)**로 분류됩니다.
- 다. 개방형·폐쇄형 구분: 이 집합투자기구는 **개방형(중도환매가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으로 분류됩니다.
- 라. 추가형·단위형 구분: 이 집합투자기구는 **추가형(추가로 자금 납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으로 분류됩니다.
- 마. 특수형태: 이 집합투자기구는 **종류형집합투자기구**(판매보수 등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르거나 판매수수료가 다른 여러 종류(클래스)의 집합투자증권을 발행하는 집합투자기구) 및 UA 클래스 수익증권과 UC - E 클래스 수익증권에 관하여 전환형집합투자기구( “JP 모간 펀드 업브렐러 클래스” 의 각 집합투자기구 간에 각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가 소유하고 있는 집합투자증권을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투자자에게 부여하는 집합투자기구)로 분류됩니다.

### 6. 집합투자업자

가. 집합투자업자의 명칭: 제이피모간자산운용코리아(주)

나. 업무위탁관련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 II .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

### 1. 주요 투자대상

이 투자신탁의 신탁계약에 따른 주된 투자대상 및 투자한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투자대상	투자한도	투자대상 세부설명
채권형 집합투자증권	50%초과	법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 법에 의하여 집합투자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 및 투자회사가 발행한 주식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성질의 외국에서 발행 또는 창설되거나 유통되는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 중 채권(전환 증권 또는 워런트 등을 포함합니다)을 주된 투자대상으로 하는 것( “채권형 집합투자증권” )

주) 이 투자신탁의 투자대상, 투자한도 및 투자제한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2.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 가.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채권형 집합투자증권을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장기적 자본증식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상기의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가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등 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 나.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 (1) 이 투자신탁의 투자전략

이 투자신탁은 투자신탁재산의 대부분을 룩셈부르크에 등록된 제이피모간펀드(JPMorgan Funds)에 속한 하위펀드인 JPMF-이머징 마켓 채권 펀드(JPMorgan Funds-Emerging Markets Bond Fund)에 투자하여 장기적인 자본증식을 추구합니다.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하위 집합투자기구인 JPMF-이머징 마켓 채권 펀드(JPMorgan Funds-Emerging Markets Bond Fund)는 자산총액의 67%이상을(현금 및 현금등가물 제외) 신흥시장 정부 또는 정부기관 및 다른 국가에 상장되었지만 신흥시장 국가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신흥시장 국가에 등록 사무소를 두고 있는 회사, 또는 신흥시장 국가들에서 상당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회사들이 발행하거나 보증한 채권 및 기타 채무증권에 투자합니다. 이러한 투자에는 외채재조정을 위한 Brady Plan에 따른 주권 국가들이 발행한 채권, 유로본드 형태의 국채 및 회사채, 양키본드 및 회사 및 정부가 발행하여 국내 시장에서 거래되는 채권 및 어음이 포함됩니다.

다만,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하위 집합투자기구는 JPMF-이머징 마켓 채권 펀드(JPMorgan Funds-Emerging Markets Bond Fund)와 유사한 투자목적 또는 투자전략을 가진 다른 집합투자기구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투자신탁의 투자전략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 (2) 이 투자신탁의 위험관리

이 투자신탁은 외화자산에 주로 투자하는 하위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기 때문에 환율변동에 따라 투자자산의 가치가 변동할 수 있습니다. 집합투자업자는 가능한 한도 내에서 외화자산의 환율변동 위험에 대비하여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하위 집합투자기구 등의 기준통화에 대한 환헷지를 하고자 하며 목표 환헷지 비율은 최고 100%수준으로 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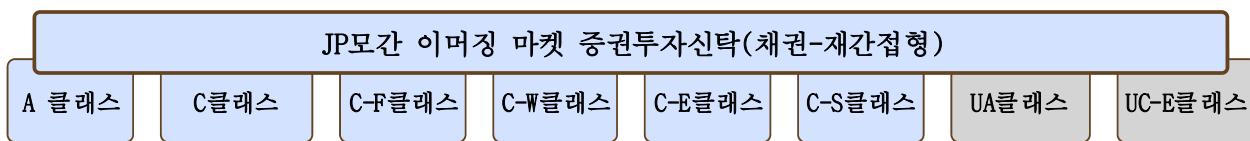
그러나 이 투자신탁의 환헷지 전략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하위 집합투자기구는 이머징 마켓의 채권 등에 투자하기 때문에, 이 투자신탁은 투자신탁의 성과 비교 등을 위해 아래의 비교지수를 사용하고 있으며, 시장 상황 및 투자 전략의 변경, 새로운 적합한 비교 지수의 등장에 따라 이 비교지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비교지수: J.P.Morgan Emerging Markets Bond Index Global Diversified (Total Return Gross)<sup>※2)</sup> 95% + 콜금리 5%

## 3. 수익구조

이 투자신탁은 집합투자기구 등에 투자되며 하위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서 발생한 순익은 종류(클래스) 수익증권을 매입한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4. 주요 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은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수익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신탁업자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의 예금과 달리 실적에 따른 수익을 취득하므로 은행등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도 예금보험공사 등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투자위험은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하위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을 기준으로 하여 본 문서의 작성시점 당시를 기준으로 투자신탁의 가치에 직접 영향을 주는 **일반위험**(투자원본에 대한 손실위험 / 시장위험 및 투자신탁위험/ 과생상품 투자위험 / 헛지위험 / 환율변동위험 / 이자율 변동에 따른 위험), 투자신탁의 고유한 형태 또는 투자전략 및 투자방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특수위험**(국가위험 / 신흥시장위험 / 러시아 투자위험 / 하위 집합투자기구 위험 / 법률, 세금 및 규정 등 제도적 위험 / 외국세법에 의한 과세에 따른 위험 / 정치적, 경제적 및 사회적 위험 / 하위 집합투자기구와의 성과차이 위험 / 거래상대방 및 신용위험), 일반위험 및 특수위험외에 **기타 투자위험**(유동성 위험 / 순자산가치변동위험 / 펀드규모위험 / 오퍼레이션 위험 / 환매연기위험 / 해지 위험)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상기의 위험은 투자의사 결정시 참고하여야 할 모든 위험이나 발생 가능한 모든 위험을 기재한 것은 아니며, 향후 투자환경의 변화 등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는 것임을 투자자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투자위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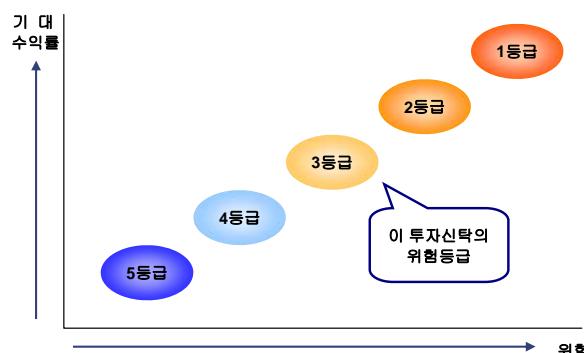
#### 5. 투자위험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및 투자대상 등을 기준으로 하여 집합투자기구의 위험등급을 5단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은 집합투자재산의 대부분을 전환 증권 또는 워런트 등에 투자하는 이머징 마켓의 채권형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므로 5등급 중 위험수준이 **3등급(중간 위험)**에 해당합니다.

이는 주식에만 투자하는 주식형 증권집합투자기구보다 낮지만 선진시장의 채권에만 투자하는 채권형 집합투자기구보다는 높은 위험을 갖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은 여유 자금으로 투자하여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하위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국가의 경제여건의 변화와 채권의 가치변동이 상관관계가 있음을 이해하며, 외국통화로 표시된 투자대상국가의 채권과 관련된 투자위험을 감내할 수 있고, 투자원본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위험을 잘 아는 장기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 6. 운용전문인력

### 가. 운용전문인력

성명	출생 년도	직위	현재 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 현황 (2010.06.30)		주요 운용경력 및 이력
			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수	다른 운용자산 규모(수탁고)	
기준환	1968	이사	16개	약 8,782억 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시간 대학교</li> <li>- 동서증권, 동원증권, 동부화재, CJ자산운용</li> <li>- 제이피모간자산운용코리아(주)</li> </ul>

## 7. 투자실적 추이(세전 기준)

신규 등록하는 투자신탁이므로 해당사항 없습니다

## III. 매입·환매·전환 관련 정보

### 1. 보수 및 수수료

#### 가.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구분 (클래스)	선취수수료	환매수수료
A	납입금액의 0.7% 이내 <sup>주1)</sup>	30일 미만: 이익금의 10%
C	-	
C-F	-	
C-W	-	
C-E	-	
C-S	-	
UA	납입금액의 0.7% 이내 <sup>주1)</sup>	90일 미만: 이익금의 70%
UC-E	-	30일 미만: 이익금의 70%
지급시기	매수시	환매시

####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구분 (클래스)	지급비율(연간, %)							
	수익자의 자격	집합투자업자 보수	판매 회사보수	신탁업자 보수	일반사무관리 회사보수	기타비용 <sup>주2)</sup>	총보수 · 비용비율 <sup>주3)</sup>	증권거래 비용 <sup>주4)</sup>
A	제한없음	0.75	0.70	0.05	0.025	0.15	1.675	0.180
C	제한없음	0.75	1.00	0.05	0.025	0.15	1.975	0.180
C-F	전문 투자자 등	0.75	0.04	0.05	0.025	0.15	1.015	0.180
C-W	Wrap account	0.75	-	0.05	0.025	0.15	0.975	0.180
C-E	온라인 가입자	0.75	0.80	0.05	0.025	0.15	1.775	0.180
C-S	집합투자 업자의 계 열회사	0.75	0.03	0.05	0.025	0.15	1.005	0.180
UA	제한 없음	0.75	0.70	0.05	0.025	0.15	1.675	0.180
UC-E	온라인	0.75	0.80	0.05	0.025	0.15	1.775	0.180

가입자					
지급시기	3개월 후급	사유 발생시	-	사유 발생시	

## 2. 과세

일반적으로 투자자는 투자대상으로부터 발생한 이자, 배당 및 양도차익에 대하여 소득세 등을 부담합니다. 이 투자신탁은 다른 간접투자기구등에 투자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투자자들은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다른 집합투자기구(투자펀드 및 투자신탁,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및 REITs를 포함함)를 처분 및 “JP모간 펀드 업브렐러 클래스”의 다른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으로 전환함으로써 얻게 되는 배당금 및 집합투자증권의 처분 이익의 범위 내에서 한국 세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투자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3. 기준가격 산정 및 매입·환매 절차

### 가. 기준가격 산정

구 분	내 용
산정방법	당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은 그 직전일의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순자산총액”이라 합니다)을 직전일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출하며 1,000좌 단위로 원 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 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합니다.
종류간 기준가격이 상이한 이유	판매보수 등의 차이로 인하여 종류(클래스)간 기준가격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산정주기	일반사무관리회사는 이 투자신탁의 기준가격을 매일 산정하며, 산정한 기준가격을 집합투자업자에 통보합니다.
공시시기	집합투자업자는 통보받은 기준가격을 판매회사 및 금융투자협회를 통하여 매일 공시합니다.
공시장소	판매회사 본·지점, 판매회사의 인터넷홈페이지, 집합투자업자의 인터넷홈페이지 ( <a href="http://www.jpmorganam.co.kr">www.jpmorganam.co.kr</a> ) 및 금융투자협회 인터넷홈페이지 ( <a href="http://www.kofia.or.kr">www.kofia.or.kr</a> )에 공시합니다.

### 나. 매입 및 환매절차

#### (1) 매입

##### ① 매입방법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판매회사 영업시간 중 판매회사의 본·지점을 통해 직접 매입 청구하거나, 판매회사가 온라인 판매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온라인을 통해 매입할 수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의 판매회사는 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홈페이지([www.kofia.or.kr](http://www.kofia.or.kr)) 또는 집합투자업자의 인터넷홈페이지 ([www.jpmorganam.co.kr](http://www.jpmorganam.c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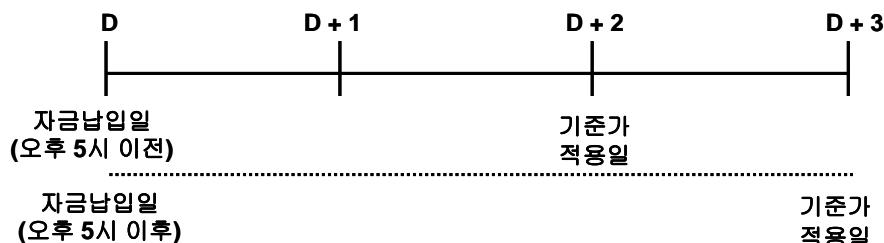
##### ②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종류 및 종류별 가입자격

종류 (클래스)	가입자격
A 클래스	투자자의 자격에 제한이 없으며, 선취판매수수료를 징구하는 종류형 수익증권
C 클래스	투자자의 자격에 제한이 없으며, 판매수수료를 징구하지 않는 종류형 수익증권
C-F 클래스	법 제9조 제5항에 따른 전문투자자 (단, 법 제9조 제5항 제4호, 법 시행령 제10조 제3항 제15호 내지 제18호에 해당하는 전문투자자는 제외), 100억원 이상 개인, 500

	억원 이상 일반법인에게 발행되며 판매수수료를 징구하지 않는 종류형 수익증권
C-W 클래스	판매회사의 일임형 Wrap 계좌를 보유한 자에게 발행되며 판매수수료를 징구하지 않는 종류형 수익증권
C-E 클래스	투자자의 자격에 제한이 없고, 판매수수료를 징구하지 않으며, 판매회사의 인터넷 판매시스템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가입하는 투자자에게 발행되는 종류형 수익증권
C-S 클래스	투자신탁재산의 안정적인 운용을 위해 10억원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에게 발행되며 판매수수료를 징구하지 않는 종류형 수익증권
UA 클래스	투자자의 자격에 제한이 없고, 선취판매수수료를 징구하며, “JP 모간 펀드 엠브렐러 클래스”의 다른 투자신탁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투자자에게 부여하는 종류형 수익증권
UC-E 클래스	투자자의 자격에 제한이 없고, 판매수수료를 징구하지 않으며, 판매회사의 인터넷 판매시스템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가입하는 투자자에게 발행되며, “JP 모간 펀드 엠브렐러 클래스”의 다른 투자신탁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투자자에게 부여하는 종류형 수익증권

### ③ 매입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 투자가 17시(오후 5시) 이전에 자금을 판매회사에 납입한 경우: 매입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은 납입일로부터 제3영업일(D+2)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합니다.
- 투자가 17시(오후 5시) 경과 후에 자금을 판매회사에 납입한 경우: 매입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은 납입일로부터 제4영업일(D+3)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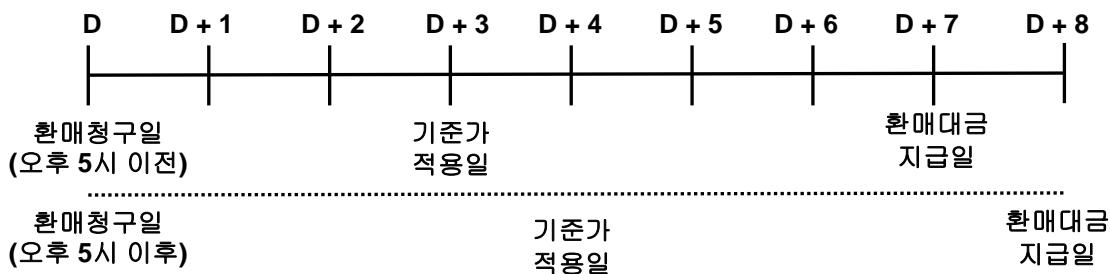
### (2) 환매

#### ① 수익증권의 환매

이 투자신탁의 수익자는 판매회사 영업시간 중 판매회사의 본·지점을 통해 관련 법령 및 이 투자신탁의 신탁계약에 따라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관련 법령 및 이 투자신탁의 신탁계약에 정하는 바에 따라 환매가 제한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② 환매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 수익자가 17시(오후 5시) 이전에 판매회사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환매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은 환매청구일로부터 제4영업일(D+3)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8영업일(D+7)에 관련 세금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
- 수익자가 17시(오후 5시) 경과 후에 판매회사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환매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은 환매청구일로부터 제5영업일(D+4)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9영업일(D+8)에 관련 세금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



### ③ 환매수수료

이 투자신탁의 모든 종류(클래스)는 환매수수료를 징구하며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 판매회사는 환매를 청구한 수익자가 당해 종류 수익증권을 보유한 기간별로 환매대금에서 환매수수료를 징구하여 환매대금 지급일의 익영업일까지 투자신탁 재산에 편입합니다.

종류 (클래스)	수익증권의 보유기간	환매수수료
A 클래스	30 일 미만	이익금의 10%
C 클래스	90 일 미만	이익금의 70%
C-F 클래스	90 일 미만	이익금의 70%
C-W 클래스	90 일 미만	이익금의 70%
C-E 클래스	90 일 미만	이익금의 70%
C-S 클래스	90 일 미만	이익금의
UA 클래스	30 일 미만	이익금의 70%
UC-E 클래스	30 일 미만	이익금의 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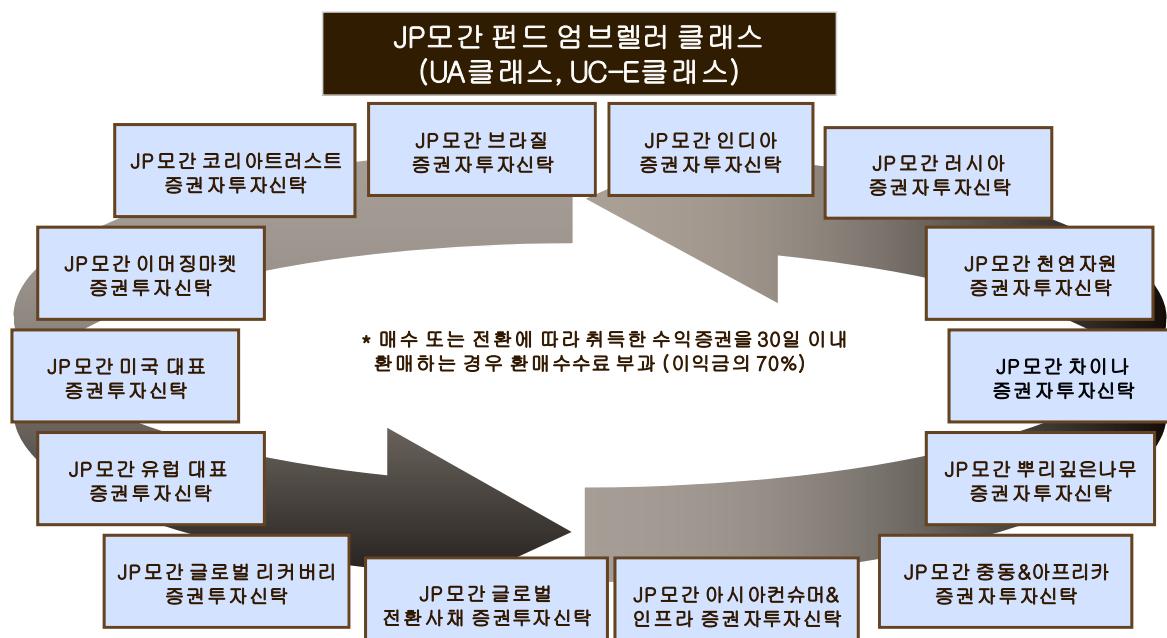
### ④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의 취소(정정) 등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의 취소 또는 정정은 매입청구일 및 환매청구일 17시[오후 5시] 이전까지만 가능합니다. 다만, 17시[오후 5시] 경과 후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를 한 경우에는 당일 중 판매회사의 영업가능 시간까지만 매입 또는 환매의 취소 또는 정정이 가능합니다. 기준시점은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으로 구분하여 처리합니다.

## 4. 전환절차 및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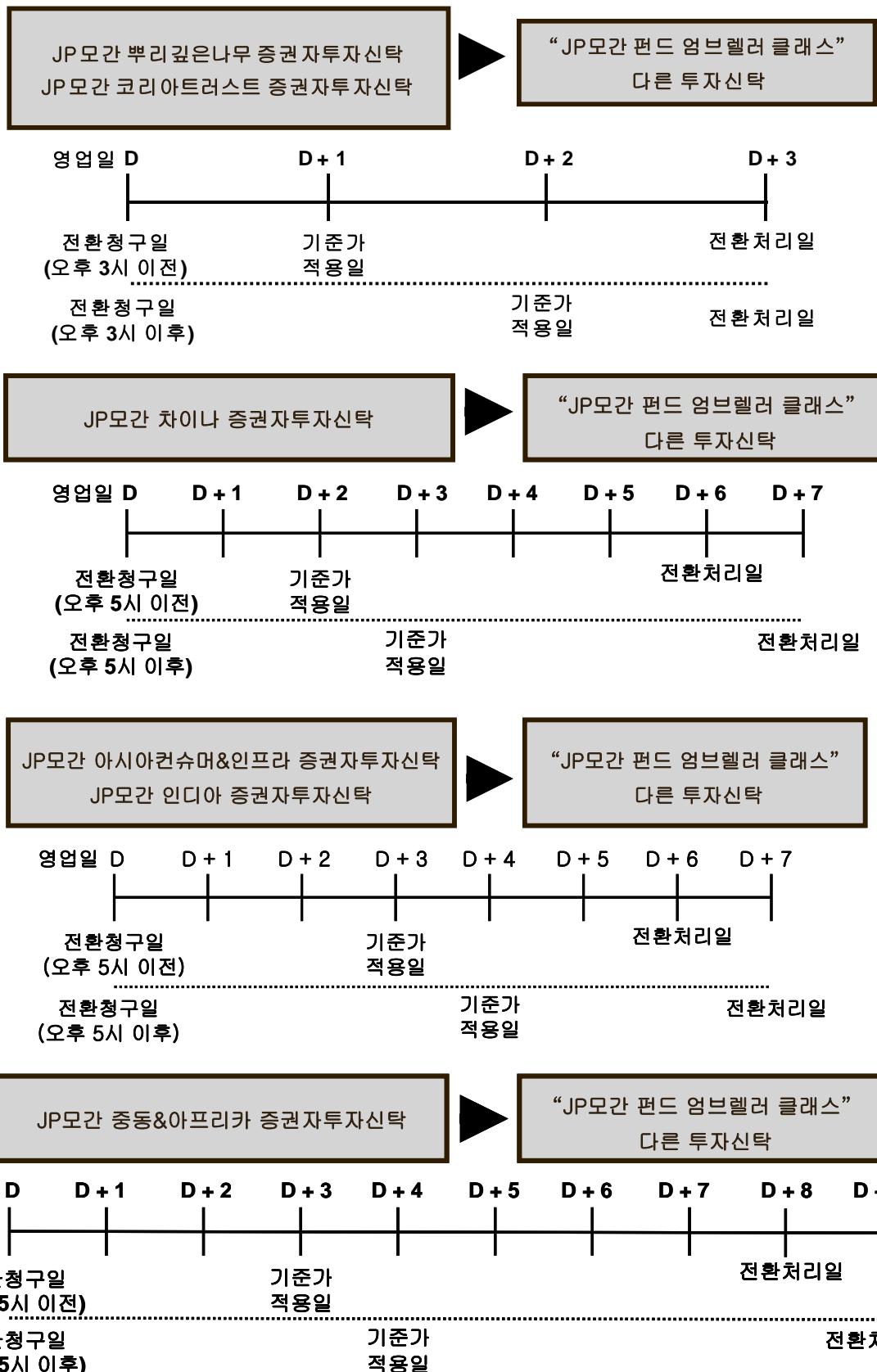
### 가. 투자신탁간의 전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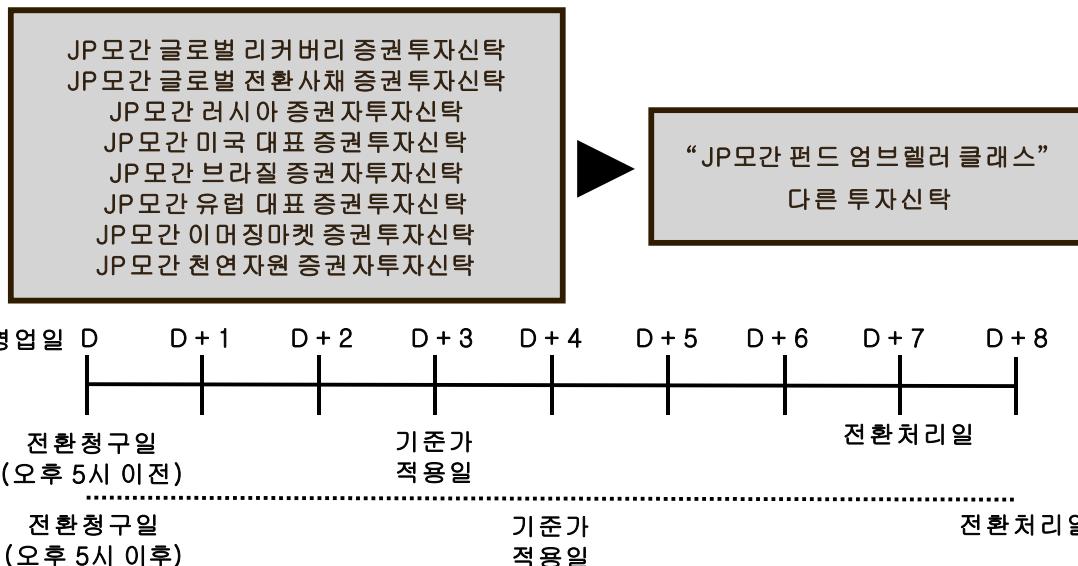
#### (1) 전환형 구조



## (2) 전환 절차 및 방법

수익자가 전환을 청구하는 경우 전환절차는 “JP모간 펀드 엠브렐러 클래스”의 각 집합투자기구의 전환처리일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집합투자기구별로 달리 적용되며, 전환대상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매입하는 기준가격은 전환처리일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으로 합니다.





### (3) 전환시 유의사항

UA클래스 또는 UC-E클래스의 수익증권을 보유하고 있는 수익자는 본 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JP모간 펀드 엠브렐러 클래스” 의 다른 투자신탁으로의 전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UA클래스의 수익증권의 수익자는 “JP모간 펀드 엠브렐러 클래스” 의 다른 투자신탁의 UA클래스의 수익증권으로만 전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UC-E클래스의 수익증권의 수익자는 “JP모간 펀드 엠브렐러 클래스” 의 다른 투자신탁의 UC-E클래스의 수익증권으로만 전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익자는 판매회사가 “JP모간 펀드 엠브렐러 클래스” 전환대상 투자신탁의 모든 클래스를 판매하지 않거나 “JP모간 펀드 엠브렐러 클래스” 의 모든 전환대상 투자신탁을 판매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이로 인해 수익자의 “JP모간 펀드 엠브렐러 클래스” 전환대상 투자신탁의 다른 수익증권으로의 전환이 제한될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투자자는 이 투자신탁의 UA클래스나 UC-E클래스 수익증권에 투자하기 이전에 판매회사에 전환을 원하는 “JP모간 펀드 엠브렐러 클래스” 전환대상 투자신탁의 UA클래스나 UC-E클래스 수익증권으로의 전환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JP모간 펀드 엠브렐러 클래스” 의 다른 투자신탁에서 이 투자신탁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III. 1. 보수 및 수수료” 에도 불구하고 판매회사는 선취판매수수료를 취득하지 않습니다.

이 투자신탁에서 “JP모간 펀드 엠브렐러 클래스” 의 다른 투자신탁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III. 1. 보수 및 수수료” 에도 불구하고 판매회사는 환매수수료를 징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수익자가 다른 투자신탁에서 이 투자신탁으로의 전환에 따라 취득한 해당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에는 “III. 1. 보수 및 수수료” 에 따라(이때 전환처리일을 매수일로 봅니다) 환매수수료를 징구합니다.

이 투자신탁에서 다른 투자신탁으로의 전환청구 시 전환청구의 취소 또는 정정은 청구당일 17 시[오후 5 시] 이전까지만 가능합니다. 다만, 17 시[오후 5 시] 경과 후 전환청구를 한 경우에는 당일 중 판매회사의 영업가능 시간까지만 전환의 취소 또는 정정이 가능합니다. 기준시점은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으로 구분하여 처리합니다.

전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IV. 요약 재무정보

##### 1. 재무정보

신규 등록하는 투자신탁이므로 해당사항 없습니다.